

한국발전공사법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5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안호영 · 윤준병 · 박희승
김의겸 · 이춘석 · 한병도
朴芝源 · 정동영 · 김윤덕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며,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 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통합적·효율적 운영과 에너지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 라.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관련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한국발전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책무) 한국발전공사는 발전사업을 수행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발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환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출자액은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발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임원) ① 공사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을 둔다.

② 상임이사 중 1명은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전환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장(이하 “전환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전환본부장) ① 전환본부장은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및 전원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전환본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전환본부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전환본부장 후보자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적임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모집하거나 조사한 후보자를 심사하고, 추천 대상자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전환본부장 후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승인하면 사장은 전환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승인은 각각 임명 제청 및 임명으로 본다.
- ⑥ 전환본부장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하며, 전환본부장은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사장과 다른 임원은 전환본부장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전환본부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전환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생에너지전환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전환본부장의 자격, 추천, 계약,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환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의 위임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전환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전환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의 사업 중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과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이하 “전환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공사는 전환본부를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그 회계를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전환본부장은 전환본부의 조직·정원·인사 및 예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승진·징계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전환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전환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의 구분)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18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 보조금 또는 융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9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익금

② 공사는 전환본부의 운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의 다른 회계와 전환본부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전환본부 회계에 계리된 자금은 전환본부의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환본부의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운용수익은 전환본부 회계에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전력자원 수급의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 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

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채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

1.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발전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자금은 전환본부 회계에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위탁) 공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적립금의 적립
6. 사업확장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적립
7. 이월이익잉여금

② 전환본부 회계에 계리된 이익금과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①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발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5개 발전공기업”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발전산업, 재생에너지, 기업경영, 법률, 회계, 재무 또는 노동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개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발전공기업이 추천하는 사람 1명씩
4. 5개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발전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1명씩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기업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5개 발전공기업의 합병으로 본다.

제5조(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출자에 관한 특례) ① 공사가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 발행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액이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공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 출자액의 산정 및 출자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하여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5개 발전공기업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9조(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 발전공기업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